

의안번호	2212766
의 퇴 인	김남희 의원
회 답 일	2025.10.22.
추계번호	25C4872

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개정안에 따라 장애인활동 지원 사업의 추진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,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활동 지원 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활동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2억 2,000만원(연평균 4,400만원)으로 추계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 계	연평균
실태조사 (안 제3조의2)	90	-	-	90	-	180	36
장애인활동 지원 기본계획 (안 제3조의3)	40	-	-	-	-	40	8
합 계	130	-	-	90	-	220	44

주: 개정안의 따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, 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조의2 (실태조사)	(제1항) 보건복지부장관은 활동지원사업의 추진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 ※(제2항)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음 (삭제)	의무규정
2	안 제3조의3 (장애인활동 지원 기본계획)	(제1항)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애인활동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	의무규정
3	안 제32조 (급여비용의 산정)	(제1항) 급여비용은 활동지원급여의 종류, 활동지원등급 및 활동지원인력의 적정 인건비 기준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함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3조의2 (실태조사)	○	○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
2	안 제3조의3 (장애인활동 지원 기본계획)	○	○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
3	안 제32조 (급여비용의 산정)	X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 가 어려운 경우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급여비용 산정 시 활동지원인력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반영(안 제32조)
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시점에서 활동지원인력의
적정 인건비 수준과 급여비용 산정 시 반영 방식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
할 수 없어 비용추계의 대상에서 제외
- 개정안에 따라 장애인활동 지원 사업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
가정하고, 해당 실태조사는 유사사례인 “2023년도 장기요양실태조사”
사업을 준용하여 추계
- 장애인활동 지원 기본계획은 유사사례인 “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신규서비스
개발 연구” 용역 사업을 준용하여 추계
- 실태조사 수행 및 기본계획 수립 단가는 추계기간 동안 변하지 않는다고
가정
-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을
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실태조사(안 제3조의2)

- 개정안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실태조사를 3년 주기로 실시하는 경우 실태조사 실시에 따른 연구용역비가 소요될 수 있음
 - 현행 법률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 및 인정, 급여수준, 근로조건 등에 대한 실태조사¹⁾를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개정안은 해당 실태조사를 동 법률에 따라 개별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
- 본 추계서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수행한 “2023년도 장기요양실태조사”의 연구용역비 단가를 준용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
 -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른 장기요양 실태조사 연구용역비를 준용하여 9,000만원²⁾ 소요 가정
 - 추계기간 동안 단가는 변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
- 추계결과,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실태조사를 3년 주기로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기간 동안 총 1억 8,000만원(연평균 3,600만원)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
 - 개정안에 따라 2027년부터 3년 주기로 해당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추계기간 중 2027년과 2030년에 추가재정소요가 발생

1) 제3조의2(실태조사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활동지원사업의 추진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.

1. 활동지원급여 신청 및 인정에 관한 사항
2. 활동지원급여의 수준, 만족도 및 수급자의 규모에 관한 사항
3. 활동지원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
4. 활동지원인력의 근로조건, 처우 및 규모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활동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
2)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있는 「2023년 장기요양 실태조사」는 조사를 수행하는 데 7억 5,000만원이 소요되었고(통계청 수행), 연구용역비로 8,950만원이 소요되었는데, 본 추계서에서는 연구용역비만 소요된다고 가정하고 장기요양 실태조사의 연구용역비 단가를 준용

[표 2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 계	연평균
실태조사 (안 제3조의2)	90	-	-	90	-	180	36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나. 장애인활동 지원 기본계획(안 제3조의3)

- 개정안에 따라 장애인활동 지원 기본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하는 경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소요될 수 있음
- 보건복지부가 2018년에 수행한 “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신규서비스 개발 연구”의 연구용역비 단가를 준용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
 - 해당 연구용역은 도입이 필요한 신규 서비스를 개발하고, 급여체계 개편 필요사항 등을 검토한 연구로, 2018년에 연구용역비로 4,000만원이 소요
 - 추계기간 동안 단가는 변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
- 추계결과, 5년 주기로 장애인활동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추가 재정소요는 추계기간 동안 총 4,000만원(연평균 800만원)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

[표 3] 장애인활동 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 계	연평균
장애인활동 지원 기본계획 (안 제3조의3)	40	-	-	-	-	40	8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한 결과이고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이므로, 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강시온	이진우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강시온	02-6788-4742	sionkang@assembly.go.kr